

[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

❖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 합격자(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

나. 총평량평균 : 3.0 이상

다. 이수학점

- 석사/박사과정 : 30학점 이상
- 통합과정 : 54학점 이상
-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학위논문심사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 **상기 가) ~ 다)항 요건 충족된 자**

- 단, 학점은 수강 신청 학점도 해당 학기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 가능(단,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중요)**

마.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중요,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석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 I' 1학기 이상, 박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 II'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중요)**

-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연구지도 이수내역이 졸업요건에 반영되므로, 연구지도(I 또는 II) 수강 삭제 및 철회로 연구지도가 미충족 되지 않도록 유의(학과와 개별연구지도와 다름. 혼동 유의)**

1.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 직전 학기(2025-1)까지 자격시험(외국어.종합시험)을 합격하고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학사포털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2025-2학기 휴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복학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중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삭제됩니다.)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

※ 중요: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생이 학사포털로 제출해야 함.



가. (심사유형지정) 포털에서 졸업심사 유형을 '학위논문'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 버튼 클릭(필수)
 ('신청' 버튼 미 클릭 시 연구계획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안 됨, 유의)

나. (연구계획서 작성·제출) 연구계획서 제출 화면에서 연구계획서 정보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중요)

다. (연구계획서 승인) 연구계획서 승인은 지도교수, 학과, 대학원으로 순차 승인이 되어야 최종 완료 됨

3.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및 영문성명(여권과 동일하도록 권장) 정정 기간 : 25. 8. 14(목) ~ 9. 19(금) 17:00까지

- 학사포털의 영문성명은 모든 증명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확인 필수, 성명 변경은 포털에서 신청

4. 논문심사위원 명부 등록 및 승인

(학생) 심사위원명부 포털 등록: 25. 9. 19(금) 17:00까지

(학과) 심사위원명부 포털 승인: 25. 9. 24(수) 17:00까지

심사위원은 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교내,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입력

심사위원 구분 (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구분: 교원번호 유무)		교원 번호	[학사포털 심사위원등록] 졸업 > 학생 > 논문심사위원등록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내부/외부 선택하여 입력
교 내	본교 및 국제캠퍼스 소속으로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	O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의료원, 미래캠퍼스 소속으로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		
외 부	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즉, 본교(국제캠퍼스),의료원,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외부 박사학위 소지자)	X	외부 심사위원 

- 석사/통합(중단) 심사위원 등록: 연구계획서 승인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심사위원장, 심사위원)

- 박사/통합 심사위원 등록: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지도교수만 등록하고, 학위논문 심사 학기에 학위
 논문 심사위원 명부 등록(유의)

가. 교내(내부) 심사위원 : 전임 및 비전임 교원

- 1) 본교 소속 : 교직원(급여)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
- 2) 본교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
 - 교직원(급여)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
- 3) 주의사항: 명예교수-비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이고 교원번호가 있는 경우 '내부'

나. 교외(외부) 심사위원 (석사는 1명, 박사는 2명까지 선정 가능, 외부 심사위원 인원수 준수 필)

: 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교(국제캠퍼스), 의료원,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자, 퇴임교원(외부심사위원번호)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해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함

: 박사과정 학위논문심사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 심사가 진행됨을 각별히 유의!

대학원 학칙 제 7장 학위논문

제31조의2(교원 자녀 논문 심사위원 관리)

-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승인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1. 석사학위논문: 3인
 2. 박사학위논문: 5인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명 이내에서 학과 심의를 거쳐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같은 조 제1항의 심사위원 변경이 필요하거나 제3항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본심사 시행 이전) 이내에 심사위원 변경 및 추가 위촉을 요청해야 한다.
- ⑤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을 초과하는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하고, 자문위원의 논문심사비는 본교 「논문심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사위원장)

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5. 학위논문 예비심사

- 예비심사 : **25. 9. 26(금) ~ 10. 24(금)까지**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작성) 접수 : 학과 지정 기간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6. 학위논문 본심사

- 본심사 : **25. 11. 21(금) ~ 12. 19(금) 까지**
- 본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 전원 작성) 접수 : 학과 일정에 따라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7. 학위논문 완성본 온라인 제출(예정): 26. 1. 8(목) ~ 1. 21(수) (예정: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제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 <https://dcollection.yonsei.ac.kr>
- ※ 인준서 날인(본심사 후 심사위원의 부재)이 늦어져 온라인 및 완성본 제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위논문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

8.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 예비심사 종료 후 예심 합격자에 한해 25. 11. 1 이후에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를 해당 학기 졸업사정 전(본심 종료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25-2학기 졸업사정 기간부터 학위수여식 이전까지의 학수여예정증명서 발행대상은 졸업예정자로 대체됩니다.

9. 유의사항

-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위에 명시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 미 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본심에 합격하였을지라도 완성된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